#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 안<br>번 호 | 11925 |
|---|---|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자 | 심사경과 |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777호 | 조정훈의원 | 2024.8.13.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9.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 | 제8044호 | 서명옥의원 | 2025.2.11.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
| | 제8989호 | 이인선의원 | 2025.3.17.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

나.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 7. 8.)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안 제20조의5제1항).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2항·제3항).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20조의6제4호).

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의7).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0조의6(종전의 제20조의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

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br><신 설> |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br>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br>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br>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br>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br>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

| | |
|---|---|
| | 를 제한할 수 있다.<br>③ 제2항에 따라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br>1. ~ 3. (생 략)<br><신 설><br><br><신 설> |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br>1. ~ 3. (현행과 같음)<br>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br>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